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1102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27 선고 2023재가단2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110269 판결

전문

원 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선고 2023.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8,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D 소유이던 부산 사상구 E 대 122㎡ 및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0.25㎡, 2층 56.79㎡(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19.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망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소외 G가 2016. 5. 3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 42,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망인은 2018. 7. 9.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H가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소외 D에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0,000,000원을 빌려주고 건설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함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H는 소외 D에게 5,000,000원만 빌려준 채 건설공사를 하도급해 주지도 않았다. 한편 망인은 할인 의뢰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 35,000,000원을 J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2,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8,400,000원(=42,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42,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는 청구원인으로 망인을 피고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7799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3. 패소판결을 받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같은 청구원인으로 망인[소송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3680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3.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른 사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선 정 자 명 단

1. B(선정당사자)
2. K
3. L
4. M
5. N. 끝.

